

定 款

한솔홀딩스주식회사

한솔홀딩스주식회사 정 관

제정 1965년 1월 15일	개정 1992년 9월 23일
개정 1969년 2월 13일	개정 1993년 2월 25일
개정 1969년 9월 9일	개정 1994년 2월 25일
개정 1970년 2월 12일	개정 1995년 2월 24일
개정 1971년 2월 12일	개정 1996년 2월 28일
개정 1972년 2월 12일	개정 1997년 2월 26일
개정 1973년 2월 12일	개정 1998년 3월 26일
개정 1975년 2월 26일	개정 1999년 3월 20일
개정 1975년 11월 28일	개정 1999년 8월 28일
개정 1976년 2월 27일	개정 2000년 3월 17일
개정 1977년 2월 24일	개정 2001년 3월 23일
개정 1979년 2월 26일	개정 2002년 3월 22일
개정 1981년 2월 26일	개정 2010년 3월 26일
개정 1984년 2월 28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1985년 2월 26일	개정 2015년 1월 2일
개정 1986년 2월 26일	개정 2015년 3월 20일
개정 1987년 2월 26일	개정 2017년 3월 31일
개정 1988년 2월 26일	개정 2019년 3월 26일
개정 1989년 2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30일
개정 1990년 2월 26일	개정 2021년 3월 31일
개정 1991년 2월 26일	개정 2023년 3월 29일
개정 1992년 2월 26일	개정 2024년 3월 27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한솔홀딩스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ansol Holdings Co., Ltd.로 기술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3. 지적재산권(브랜드, 상표권)의 판매 및 용역사업
4. 자금조달 사업
5.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6. 국내외 광고·홍보 대행업
7. 동산 매매 및 임대업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9.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10. 정기 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11. 문화예술 사업
12. 신사업 관련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
13.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4. 전기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3 조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sol.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및 사채

제 5 조 (수권자본 및 주식의 액면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칠천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은 일천만주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4%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본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당해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하 “주식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때 당해 주식 등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당해 주식 등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정한 방법에 따르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일반공모증자 등)

-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본 회사의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삭제 <2019.3.26>

제 13 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야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오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공모발행의 경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일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일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공모발행의 경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 18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9 조 (소집 및 통지)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④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사외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의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 35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이사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40 조 (감사위원회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2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6 조 (이익의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④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에 귀속된다.
- ⑥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1.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칙 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3.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 3.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3.26. 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8조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3.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3.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3.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3.27. 부터 시행한다.